

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5-2026호

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(방화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5호(2010.3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94호(2016.7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19호(2018.4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1호(2021.2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78호(2022.2.24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어 조합설립인가(2017.4.3.), 사업시행계획인가(2018.11.5.), 관리처분계획인가(2021.8.4.),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2022.5.25, 2023.8.3.)된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49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일반인에게 공람·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5년 11월 12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1. 공람기간: 2025. 11. 12. ~ 2025. 11. 26.(공고일 포함 15일간)
2. 공람장소: 강서구청 도시재생과(☎02-2600-6747)

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02-2633-4541)

3. 공람내용

가. 사업명칭: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위 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8-97 일대

다. 시행면적: 31,554.2㎡

라. 시 행 자: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: 하승현)

마. 사업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6개월

바. 변경내용: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, 정비사업비 등
사업시행계획 변경

사. 관계서류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아. 기타사항

-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 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이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마감일 18:00까지 강서구청 도시재생과에 의견서를 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 바람

붙임 공람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사업시행변경계획(안)』

[illegible]

의견제출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- 186 -